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박승진 의원
- 의안번호 : 제1831호
-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7일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2. 제 안 이 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공원녹지법 시행규칙)에서는 도시 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, 장사시설인 묘지는 묘지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음
- 그러나 국토교통부훈령인 「도시공원·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」을 준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역사공원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음
- 이에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‘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’에 문화유산인 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문화유산을 추가함
(안 제5조제4항제5호)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‘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’에 문화유산인 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1)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는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, 생활권공원, 주제공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각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(같은 조 제2항)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등(동 법 제19조제7항)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.

-
- 1)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1. 국가도시공원: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
 2. 생활권공원: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·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
가. 소공원: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나. 어린이공원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다. 근린공원: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 3. 주제공원: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
가. **역사공원**: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, 유적·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나. 문화공원: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다. 수변공원: 도시의 하천가·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·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라. **묘지공원**: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
마. 체육공원: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바. 도시농업공원: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사. 방재공원: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
아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
-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-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의 범주에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써 공간의 성격과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공원시설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,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역사공원²⁾은 역사자원의 보호·관람·안내를 위한 시설, 묘지공원³⁾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되, 각각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일부 위임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‘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’로 ‘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’를 추가하려는 것이나, 묘지공원이 아닌 역사공원에 예외적으로 묘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령 검토결과 서울시조례에서 특별히 허용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.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 및 제14조(사설묘지의 설치 등)에서는 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세부적으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) 및 제15조(사설묘지의 설치기준)에 따라 묘지구역 외에는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어 도시공원(역사공원)에 매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.⁴⁾
- 특히, 서울시 내 역사공원에 대해 애국지사 등의 묘지설치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경희궁공원과

2) 6.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·관람·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·휴양시설(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)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]로 할 것

3) 9.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·휴양시설·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

4) 예외적으로 사육신공원(역사공원)에 조성된 사육신묘는 공원 지정 전 묘역이 조성된 사례로, 지정 시 조성된 추가 묘역은 가묘임.

같은 역사공원의 단일한 성격을 침해하는 공간구성이 될 수 있으므로 「공원
녹지법」에서 허용하는 묘지공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
됨.

- 또한, 안 제5조제4항제5호에서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
으로 애국지사 이외에 ‘문화예술인 등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이
명확하지 않아 대상선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임.

[붙임] 서울시 역사공원 및 묘지공원 현황

□ 역사공원(22개소)

공원명	구분	주소	면적(㎡)	관리청
경희궁	시공원	신문로2가 2-1	100,930	종로구청
동묘	구공원	승인 238-1	8,450	종로구청
도렴	구공원	신문로1가 240-5	832	종로구청
공평1	구공원	인사동 210 일대	2,800	종로구청
한빛미디어파크	구공원	삼각동 118	2,105	중구청
서소문	구공원	의주로2가 16-2	21,363	중구청
정동	구공원	정동 15-1	8,160	중구청
수표동	구공원	수표동 11-9	1,240	중구청
을지로2가	구공원	을지로2가 101-42	1,551	중구청
신계	구공원	신계 1-29일대	15,000	용산구청
이태원부군당	구공원	이태원동 191-3	2,020	용산구청
(가칭)이봉창역사공원	구공원	효창동 286-7	484	용산구청
성북2구역 재개발	구공원	성북동 223 일대	2,797	성북구청
선농단	구공원	제기 274-1	3,933	동대문구청
역사공원	구공원	영등포동 7가 155-30	2,962	영등포구청
양화진	구공원	합정동 139-21 일대	4,804	마포구청
사육신	시공원	노량진 152-3	47,832	동작구청
봉은	구공원	삼성 75	75,635	강남구청
수서	구공원	수서동 532	20,504	강남구청
암사역사공원	시공원	암사 137-2 일대	110,198	강동구청
백제초기적석총	구공원	가락로7길 21(석촌동)	45,137.8	송파구청
방이동고분	구공원	오금로 219(방이동)	30,293.7	송파구청

□ 묘지공원(4개소)

공원명	구분	주소	면적(㎡)	관리청
외국인	구공원	합정 146-3	13,224	마포구청
망우	시공원	망우 산57-3	354,749	종량구청
추모	구공원	원지동 76	127,836	서울시설관리공단
현충	구공원	상도 7-137	1,404,032	국립현충원